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

| | |
|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| 959호 |
|------|------|

2019년 12월 20일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8월 7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19년 8월 13일
- 다. 상정결과 :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
(2019년 11월 26일 상정·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문화본부장 유연식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에서는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공연예술 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.
- 이에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(1) 사업개요

1) 사 무 명 :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

2) 추진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- 「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3) 필 요 성 :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
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

4) 사무내용

- 음악연주활동

- 음악·공연 교육사업 및 조사·연구

- 연주자 육성사업

- 공연예술시설의 관리·운영

- 국내·외 공연예술단체와의 교류·협력

-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
위탁하는 사업

-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

(2)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기관 개요

1)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

2) 규 모 : 건물 2,043.58 m^2

다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경욱)

가. 동의안 개요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¹⁾에 의거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.

나. 출연의 필요성

- 서울시립교향악단은 교향악단 활동을 통하여 서울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, 문화도시 서울의 음악적인 수준과 역량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립·운영되고 있음.
-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출연금을 기반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기획하여 예술적 발전을 추구하고 교향악단의 경쟁력을 강화하며
- 우리동네 음악회, 청소년오케스트라캠프 등의 음악소외계층에게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클래식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.

<최근 3년간 출연금 편성 현황>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(안)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총 예산 | 20,769 | 20,660 | 20,817 | 24,234 |
| 출연금 | 11,690 | 12,118 | 13,627 | 17,659 |
| 비율 | 56.3% | 58.7% | 65.5% | 72.9% |

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이는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 규정임.

다. 출연규모의 적정성

- 2020년도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출연금은 176억 5,900만원으로 2019년 출연금 136억 2,700만원 대비 29.6%인 40억 3,300만원이 증가하였음.

(단위 : 백만원)

| 정책/단위/세부사업 | 2020년도(안) | 2019년도 | 증감 | 증감율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총 계 | 24,234 | 20,817 | 3,417 | 16.4% |
| 서울시출연금 | 17,659 | 13,627 | 4,033 | 29.6% |
| 서울시출연금 | 17,659 | 13,627 | 4,033 | 29.6% |
| 자 주 재 원 | 5,450 | 5,197 | 253 | 4.9% |
| 공 연 사 업 ⁽¹⁾ | 2,697 | 2,453 | 244 | 9.9% |
| 정 기 공 연 | 1,983 | 1,804 | 179 | 9.9% |
| 기 업 공 연 | 100 | 100 | | |
| 외 부 출 연 | 314 | 314 | | |
| 순 회 공 연 | 250 | 184 | 66 | 36.2% |
| 시 민 공 연 | 50 | 52 | -2 | -3.1% |
| 일 반 사 업 ⁽²⁾ | 2,753 | 2,744 | 9 | 0.3% |
| 월간지발매 | 18 | 18 | | |
| 회원사업 | | 47 | -47 | -100.0% |
| 후원사업 | 247 | 200 | 47 | 23.5% |
| 협찬사업 | 2,325 | 2,325 | | |
| 음반발매 | 2 | 2 | | |
| 교육사업 | 23 | 14 | 9 | 67.1 |
| 기타수입 | 138 | 138 | | |
| 세 계 잉 여 금 | 1,125 | 1,994 | -869 | -43.6% |

- 주요 증액 사유는 인건비가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13.8% 증가한 17억 2,4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142억 900만원임.

서울시립교향악단은 올해 음악감독이 선임된 만큼 '20년부터는 그동안 보류되었던 교향악단 결원 채용을 통해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예술적 역량을 강화해 나아갈 예정임.

- 또한 전통시장 클래식나들이, 클래식거리공연, 우리동네음악회 등 시민공연 사업의 확대 및 생애주기별 교육 사업의 확대, 재단 홍보용 영상 제작 등 서울시향 공연의 시민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함.

서울시립교향악단의 총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2.9%로 후원협찬의 확대와 공연수입 증대 노력을 통해 자주재원의 확보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959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공연예술 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.
- 나. 이에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1) 사무명 :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
- 2) 추진근거
 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 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3) 필요성 :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
- 4) 사무내용
 - 음악연주활동

- 음악·공연 교육사업 및 조사·연구
- 연주자 육성사업
- 공연예술시설의 관리·운영
- 국내·외 공연예술단체와의 교류·협력
-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
-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

나.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기관 개요

- 1)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
- 2) 규 모 : 건물 2,043.58m²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문화정책과 문화협력팀 김성재 (☎ 2133-2528)